

【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제정 및 개정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공사원가에 반영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13일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11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국가 시행공사의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정 회계예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이며, 개정 회계예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선금지급 요령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적격심사기준 등이다.

■ 수수료 · 보험료 원가반영

지급보증수수료의 부담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기피하는 등 하도급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되 하도급지급보증서에 대한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급수수료에 포함하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보증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인정하되 최고 등급업체에 대한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지금까지 50% 미만을 지급해 오던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

이와 함께 원가에 반영되는 산업재해보험금과 고용보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하였다.

■ 저가심사기준 제정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천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발주기관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저가심의를 도입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산업



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방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저가심의기준에서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
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해 부적정한 입찰
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수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찰금액 총액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자는 과도한 저가입찰로 보고 공종별 입찰금액 심
사에서 부적정한 공종수 기준을 10%에서 5%로 강
화해 적용한다.

이때 부적정한 입찰금액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당
해 공종에 대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이다.

이와 관련 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
우 이를 부적정한 입찰 1개로 산정하되 부적정한 입
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이 당해 공사의 공종별 평
균입찰금 순위에서 상위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
는 공종이면 1.5개로 산정해 작은 공종에 기준을 맞
춰 저가심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방지했다.

또 세부공종의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무효인 입찰
과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입찰금액
이 입찰자 평균입찰자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입
찰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 평균입찰금액
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
종 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저가심의를 필요한 세부공종은 발주기관이 공종
금액의 크기와 공종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선정,
현장설명서 교부하게 된다.

공종의 선정과 관련하여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구
분하고 각 공종의 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으로 분류해 심사하게 된다.

■ 저가낙찰자 불이익 폐지

재정경제부는 PQ심사기준과 선금지급요령 개정
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낙찰자에 대
한 불이익 조치를 폐지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
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후적 불
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입찰
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PQ점수 감점
과 선금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줬었다.

이와 관련 PQ기준 중 신인도는 점수에서 덤핑입
찰 1회 낙찰자는 1점, 통산 2회 낙찰자는 3점, 통산
3회 낙찰자는 6점, 통산 4회 낙찰자는 10점, 통산 5
회 낙찰자는 15점으로 각각 감점하고 있다.

또 선금지급요령을 통해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20%의 선금을 지급하되 최저가낙
찰제 대상공사의 저가낙찰자에 대해서는 10% 미만
의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었다.

■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재정경제부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제정,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이는 현행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나 신기술·신공법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하게 시간이 소비되는 단점이 지적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확한 실적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직접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방식과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각각 적용해 산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간접공사비 산출을 실적공사비로 산출된 직접공사비가 노무비 등 세부비목으로 구분이 어려워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비 산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실적공사비 이외의 공종도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과는 달리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간접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실적공사비에 의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적격심사기준 개정

중소규모공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축소·조정하였다.

종전에 적용했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을 중 자산회전을 삭제한 것이다.

소규모공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최초 결산서 요건도 완화해 업종등록시 기업진단서 이외에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함으

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 턴키·대안 평점산식 재정

종전에는 턴키와 대안입찰 모두 입찰가격과 최저 입찰가격의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되 응찰율이 80% 미만인 경우 감점산식에 의해 감점해왔다.

이에 따라 응찰율이 낮아질수록 가격점수가 상승하다가 감점산식이 적용되는 응찰율 80% 미만 구간에서는 가격점수 부여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안입찰의 경우 응찰율이 80%인 경우 가격점수가 제일 높아 낙찰율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해 입찰가격이 경쟁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응찰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산식을 적용하되 턴키공사의 경우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때의 점수와 60% 때의 점수차를 3분의 2점(대안은 4분의 1점)에 일정한 기울기로 점수를 배분하도록 하였다.

■ 공동도급제도 개정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출자 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었다.